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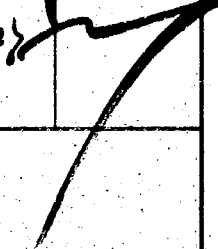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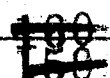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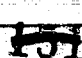


# 기안용지

분류기호 문서번호	A민150-2240	(전화번호 463 )	전결부장 < >	조 / 항 전결사항
처리기산	84.11.	시 민 과 장		
시행일자	84.11.			
보존연한	85.12.31.			
보 조 기 관	문서관리계장 		협 조	반천/재인 
				인원 재인 
기안책임자	조동수 84.11.			
경 수 합 계	행 정 과 장	발 신	과 장	동 계
제 목	구경으로 작성하여야할 창조업무 현황조사.			
	1. 행정 150-593 (84.11.19)와 관련하여 우리과			
	소관사항을 별첨 서신과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3. 구경.사업소에서 본과 각과의 협조하여야할 직장대상			
	1부 끝.			
				정서
				관인
				발송
			161	

# 구청. 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해야할 지정대상 업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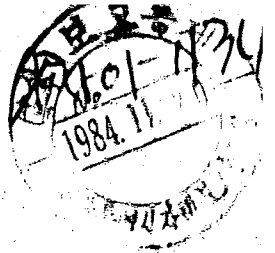
---

일련 번호	협조요청(구.사업소 과표시)	사 무 명	근 거	협조기관 (본청주관과)	소요일
1	구(시민봉사실) 및 산하사업소 (주무과)	관·인교부 신청	관인규정 제5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	시민과	7

"아껴쓰는 에너지 내집으로 나마른다"

(관인 생략)

서울특별시



행정 150-595

225-7661

84. 11. 19.

수신 수신처참조

제목 본령으로 지정하여야 할 업무업무면허조사

1. 기관간 업무면허조규정(대통령령 11385호 84.3.16자 관보 및 총리령 제286호 '84.6.26자 관보)에따라 서울특별시 중앙부처와 업무면허 업무 서울시 각급기관간 업무면허조규정, 사업소에서 본령으로 업무면허 업무면허를 파악하여 본령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달하오니 기일엄수 보고(총보)함것.

가. 태정 업무

- 서울특별시 각급 중앙부처에 인가, 승인신청, 협의, 동의, 집의, 의견조 회동은 요하는 업무
- 지정 각급간, 또는 규정, 사업소에서 본령, 각각로 요청하는 인가, 승인업무.
- 기타 각급 행정기관사이 또는 보조기관사이에 행하여지는 행정지원 요청사항등.

나. 조사대상에서 제외할 업무

- 기관간 업무면허 시행규칙(총리령 제286호 '84. 6.26 공포- 관보 제9777호, 71페이지참조) 제7조 1항 범표1에 이미 지정된 업무
- 개별 법령에 기관간 업무면허에 관하여 업무면허조외내용, 처리기간 처리대상 기관등이 명백히 정해진 업무

다. 조사보고 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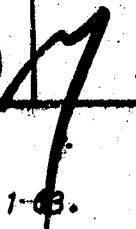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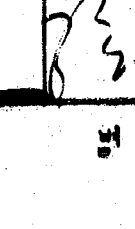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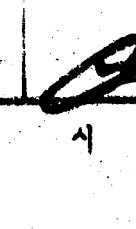
- '84.11.19- 11.24까지 조사
- '84.11.26까지 행정과장 참조 보고

타. 보고양식 : 별첨

마. 보고서 작성요령

- 보고양식법과 별첨 작성
- 별첨 보고양식 중 3은 업종 요청을 받은 본청 주관과에서 작성(구청,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송인, 인가 요청동의 사항기록)
- 해당사항없는 과에서도 "해당사항" 있음을 표시.

첨부 : 보고양식 (1,2,3) 1부. 끝.

체	민원2계장	민원1계장	문서관리계장	시민과장	결재
					재

서 부 서 장

수신처 : 서과 1-63.

정부공문서규정 제27조 제2항외 규정에의하여

내부국장용 배영전검



보 고 양 식

36 262

84.

626 9177

서울시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야함 지정대상 업무

7. 19 97962

# 1

입력 번호	협조요청 기관 (국, 과)	사무명	근거	협조 기관 (중앙 부처명)	소요기입			비고
					회단	회장	적정	
	시민바	구정사업 기초사업	행정자치부 시정	간과부	10	50	30	

※ 중앙부처에는 리.침을 포함한다.

# 2 서울시 각과 상호간 협조해야 함 지정대상 업무

입력 번호	협조요청 과명	사무명	근거	협조기간	소요기입	비고
	각과	민원서비스 추진사업				

# 3 구정, 사업소에서 본정 과과와 협의해야함 지정대상업무

입력 번호	협조요청(구, 사업소) (과표시)	사무명	근거	협조기관 (본정주관과)	소요입	비고
	구정사업 (시민서비스)	관인교부 운영	간과부 시정	시민바	7	

보 고 양 식

서울시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야 할 지정대상 업무

# 1

입면 번호	업종요청 기관 (국, 과)	사무명	근거	업종 기관 (중앙 부처명)	소요 기입			비고
					회단	회장	적정	
	41111	41111	행정안전 117%	공보부	10	30	25	

• 중앙부처에는 지.청을 포함한다.

# 2

서울시 각과 상호간 협조해야 할 지정대상 업무

입면 번호	업종요청 과명	사무명	근거	협조 기관	소요 기입	비고
	각청과	민생서비스 2015년 비고				

# 3

구청, 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해야 할 지정대상업무

입면 번호	업종요청(구, 사업소 (과표시))	사무명	근거	협조 기관 (본청주관과)	소요 기입	비고

부 권 자

수신 서울시정청국장

1968. 11. 14

참조 편이국장

제목 부계은병 수가 발급 요청

1. 별기 2039-3713(84. 11. 14)호에  
관한입니다

가. 의뢰자 구본 (전화번호 3713)이  
당사 기관에서 구본의 부계은병 수가 발급을  
요청하여서 부계은병 수가 발급을 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부계은병  
수가 발급이 어렵습니다.

서	제	기	장
국	장	부	국
장	부	국	장
부	국	장	부

발신

서

민

국

장

인공 고운말을 잘 "받는" 자  
 - 민원청, 민심으로 적하자 -

시 용 부 피 시

민허 2020- 3/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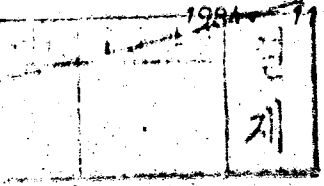
(전화555-2715)

1984. 11. 14

수신 서울특별시청

발신 시민단체

제목 민원청 민심조사관 임명 요청



1. 서울특별시 민원청 제 516호 (20. 10. 5) 관련

2. 귀청과 민허과, 민원청 근무를 제청에 있어서 당과는 서울시에  
 예산을 사출하고 민원청 제청을 위한 예산을 제청할 필요가 있으나, 민원  
 청 예산이 부족하여 민원청 업무가 지연되고, 서울시에 예산을 사출하여 민원청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예산을 사출하여 민원청 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청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예산을 사출하여 민원청 업무가 지연되고  
 민원청 업무가 지연되고 있으므로, 서울시에 예산을 사출하여 민원청 업무가 지연되고

① 민원청 추가 임명 요청 조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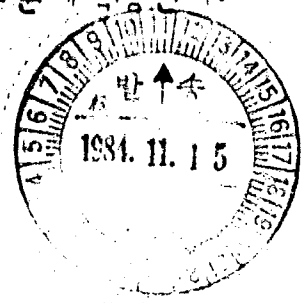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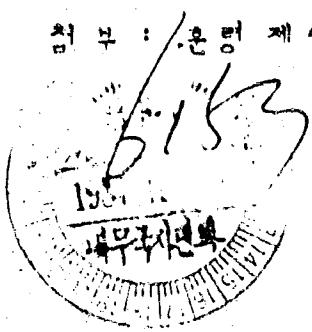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민원청 근무를 제청하는 조문(제청조문)이

② 추가 임명 내용

제청조(제청조문)이 규정된 서울특별시 시민과 민원청

시민 봉사단, 민허과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적용한다.

첨부 : 민원청 제 516호 사본 첨부



국 차 국

정무공문서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하. 위 전 결



# 기안용지

분류기호 분시번호	4010-2240	(전화번호 463 )	권·결·규·정 과 과 과 장	조 / 함 인결사항
처리기간	84.11.			
시행일자	84.11.			
보존연한	85.12.31.			
보 조 기 관	문서관리계장		합	
			인원	
기안배위사	순동수 84.11.			
경 수 참	유 신 조	행 경 과 장	발 과 장	통 계
제 목	본청으로 자청하여야 할 형조업무 현황조사. 1. 행정 소-1안조(84.11.19)와 관련하여 우리과 소관사항을 별첨 서류과같이 제출합니다.			
첨부: #3. 구청.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하여야 할 자청대상업무 1부 끝.				
				경서
				관인
				발송

# 구청. 사업소에서 본청 각과와 협의해야할 지정대상 업무

일련 번호	협조요청(구.사업소 과표시)	사 무 명	근 거	협조기관 (본청주관과)	소요일
1	구(시민봉사실) 및 산하사업소 (주무과)	관인교부 신청	관인규정 제5조 서울특별시 관인규칙 제3조	시민과	7

"아끼스는 에너지 넘치고 낙관적이다"

(관인 생략)

서 울 특 별 시



행정 150-595

325-7661

84. 11. 19.

수신 수신서참조

제목 혼령으로 지정하여야 할 업종업무 현황 조사

1. 기관간 업무협조구정(대통령령 11385호 84.3.16지 관보 및  
총리령 제286호 '84.6.26자 관보)에따라 서울특별시 중앙부처와 업종  
업무 서울시 각급기관간 업종업무,구청,사업소에서 본적으로  
업종업무를 파악하여 혼령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다음사항을 시달  
하니 기입업수 보고(통보)함것.

가. 태성업무

- 서울특별시 각급 중앙부처에 인가,승인신청,협의,  
동의,협의,회견회의등을 요하는 업무
- 시청 각과간, 또는 구청,사업소에서 본성,과과로 요청  
하는 인가, 승인업무.
- 기타 각급 행정기관사이 또는 보조기관사이에 행하여  
지는 행정지원 요청사항등.

나. 조사대상에서 제외업무

- 기관간 업무협조 시행규칙(총리령 제286호 '84. 6.26  
공포- 관보 제9777호, 71페이지참조) 제7조 1항 범표1에 이미 지정된업무
- 개별 법령에기관간 업무협조에 관하여 업무협조의내용,  
처리기간 처리대상 기관등이 명백히 정해진 업무

다. 조사보고 기간

- '84.11.19- 11.24까지 조사
- '84.11.26까지 행정과장 양조 보고

마. 보고양식 : 별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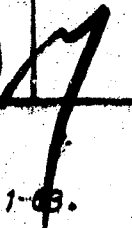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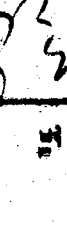
마. 보고서 작성요령

○ 보고양식별 과별 작성

○ 별첨 보고양식 3은 업종 요청을 받은 본청 주관과에서 작성(구청, 사업소에서 본청으로 승인, 인가 요청동의 사항기록)

○ 해당사항없는 과에서도 "해당사항" 없음을 표시.

첨부 : 보고양식 (1,2,3) 1부. 끝.

계	민원2계장	민원1계장	문서관리계장	인민과장	결재
					재

서 부 관 시 장

수신처 : 서과 1-63.

정부공문서 규정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국장 문밖영전



제출 PV. 7.16

96 802

626 9777

PV.

7.19 97962

보고양식

서울시에서 중앙부서 협의를 받아야 할 지정대상 업무

# 1

입력 번호	업종요청 기관 (국, 과)	사무명	근거	업종 기관 (중앙 부서명)	소요 기일			비고
					회단	회장	적정	
	시민라	주공임대 비밀번호	무량가제 반제33 728	상관부	10	50	30	

11 -> 반제33

\* 중앙부서에는 이, 청을 포함한다.

# 2 서울시 과과 상호간 협조해야 할 지정대상 업무

입력 번호	업종요청 과명	사무명	근거	업종기관	소요 기일	비고
	각청과	비밀번호 32145678 비밀				

# 3 구정, 사업소에서 본청 과과와 협의해야 할 지정대상업무

입력 번호	업종요청(구, 사업소) (과표시)	사무명	근거	업종기관 (본청주관과)	소요 기일	비고
	구 및 시정사업소 (344) (시정사업)	관인라 신청	간담회 제2 1993년 12월24 2472	시민라	7	118

보 고 양 식

서울시에서 중앙부처 협의를 받아야 할 지정대상 업무

# 1

입력 번호	업종요청 기관 (국, 과)	사무명	근거	업종 기관 (중앙 부처명)	소요 기입			비고
					최단	최장	적정	
	지인리	...	법제333 2076	공공부	10	30	25	

~~11~~ ~~법제333~~

\* 중앙부처에는 지.청을 포함한다.

# 2

서울시 과과 상호간 협조해야 할 지정대상 업무

입력 번호	업종요청 과명	사무명	근거	협조기간	소요 기입	비고
	국정실	민생실 20110243 2011				

# 3

구청, 사업소에서 본청 과과와 협의해야 할 지정대상업무

입력 번호	업종요청(구, 사업소 (과표시))	사무명	근거	협조기관 (본청주관과)	소요 기입	비고

165